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지정취지

주민의 왕래가 많은 강남대로변 보행로 일부구간과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 : 2015년 3월 5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가. 강남대로 강남구 관할 보행로 : 동측 697m

┌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 142m

└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 서울빌딩(강남대로 338) : 555m

나. 지하철 출입구 9개소 주변

- 지하철 강남역 12번, 역삼역 1번~8번 :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 지정 위치도



【강남대로 금연구역 연장구간 / 강남역 12번 출입구】



【역삼역 1~8번 출입구】

4. 단속 개시일 : 2015년 6월 1일(지하철 출입구 주변-2015.7.1.)
5. 계도기간 : 2015. 3. 5 ~ 2015. 5. 31
6.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3423-7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